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0021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2. 14 선고 2022나201822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가합100213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정재하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윤현철, 장윤정

변론 종결2022. 3. 11.

판결 선고2022. 4. 22.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290,457,1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90,457,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65,276,0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제1 예비적으로

1. 피고와 소외 E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65,276,0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제2 예비적으로

1. 피고와 F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2.자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65,276,067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D 주식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이 유

1. 당사자 등의 지위

가. 원고는 스텐레스 도·소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 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금속기기,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다. C는 2013. 2.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파이프 구매, 판매, 대금 회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동시에 2014. 7. 22.부터 G회사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2. 원고, 피고, D, C(G회사) 사이의 거래관계

가. 피고는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원고와 합계 약 25억 원 상당의 파이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파이프를 매수하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C로부터 공급받은 파이프를 피고에게 공급하였는데, 그 실질적인 파이프 공급은 C가 직접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제3자에게 공급하고, C가 거래명세표의 '인수자란'에 서명을 하는 방식(직송매입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파이프를 다시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C에게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 등

C는 아래에서 보는 관련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던 2018. 4.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위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또한,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2018. 4. 9. 위 채권양도 사실을 D에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D에 도달하였다.

4. 관련소송 및 선행소송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1 선행소송 1) 원고는 2015. 8. 3. 및 2015. 9. 9. 피고에게 242,657,140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또는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3041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5. 11. '원고가 피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고, C는 파이프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명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C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항소하였다.

2) 이에 대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29550호)은 2018. 1. 26. '원고는 피고와의 위각 거래와 관련하여 C에게, 2015. 7. 29. 액면금 130,441,960원의 약속어음을, 2015. 9. 9. 103,493,280원의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였고(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제1 약속어음'이라 한다), C는 이를 D에 배서·양도하였으며, 원고는 D에게 제1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233,935,240원(= 130,441,960원 + 103,493,2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의 영업담당 상무이사인 C가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명세서의 인수자란에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C에게 제1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 소지자인 D에게 액면금 합계 233,932,240원¹⁾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약속어음 결제로 인한 손해액인 233,932,240원 중 60%에 해당하는 금액인 140,359,3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다213668호), 위 상고는 기각되었다(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 한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관련소송 1) D는 2016. 11. 16. 피고 등을 상대로 D가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 피고로부터 956,515,092원 상당의 파이프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파이프 매매대금 791,239,025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D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791,239,025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9683호).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가 C에게 실제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C로부터 물품대금 486,500,09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D는 C에게 위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위 486,500,098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18가합528396호).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8. 11. 1. D의 본소에 관하여 '피고는 C와 공동하여 D에게 791,239,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피고의 반소에 대하여 'D와 C 사이의 계약관계가 불성립하거나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이에 대해 항소심은 2020. 1. 9. 본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056호)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반소(서울고등법원 2018나2072063)에 관하여 'C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1. 31. D에게 "C가 D로부터 2015년 1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사이에 956,515,092원 상당의 파이프 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정 등을 근거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C의 D에 대한 기지급 물품대금 반환채권인 이 사건 채권 321,224,031원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D는 피고에게 321,224,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D와 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았다(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 선행소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 원고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파이프 매매대금 878,846,036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 878,846,036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가합104659호).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직원인 C가 물품을 공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각 거래명세서의 인수인란에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C(G회사)에게 액면금 837,721,59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어 C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였다.

이 법원은 2020. 8. 14. '위 매매계약 중 진성거래로 볼 수 있는 115,632,99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계약이 피고의 2019. 1. 30.자 준비서면 부분의 송달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763,213,046원(= 878,846,036원 - 115,632,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상계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C의 물품인수 확인을 믿고, C에게 각 약속어음(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제2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어음소지인 D에게 726,142,760원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며, 다만 피고의 책임을 60%인 435,685,656원으로 제한한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327,527,390원(= 763,213,046원 - 435,685,6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0나2030109호), 2021. 6. 24. 위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당사자들은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 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제2 선행소송의 1심에서 2018. 7. 25.자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는 C(G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액에서 위 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18. 11. 27. 제2 선행소송의 1심에서 관련소송의 1심판결문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11. 29. 위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③ 2019. 5. 3. 제2 선행소송의 1심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C는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증언하였다.

④ 원고는 제2 선행소송의 1심에서 2019. 7. 17.자 준비서면을 통해서도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제2 선행소송의 1심에서 피고가 관련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원은 피고가 제2 선행소송을 통해 원고에게 구하는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C는 제2 선행소송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피고는 제2 선행소송의 1심 진행 과정에서 관련소송의 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가 위 1심 판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관련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제2 선행소송의 1심에 제출한 2020. 3. 2.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C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제2 선행소송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제2 선행소송에 관련소송의 1심 판결문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관련소송의 1심은 'C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소송의 1심 판결문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는지를 떠나, C의 D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자체에 관해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② 피고는 제2 선행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 3. 2.경 관련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문에는 'C가 201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관련소송의 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 31.경 D에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비로소 피고가 D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중 321,224,031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한 후 비로소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 및 C의 사해의사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2015. 1. 30.경부터 2015. 7. 17.경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파이프 매매대금 878,846,036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제2 선행소송을 통해 위 돈의 반환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만일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면 해당 금원 상당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2 선행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소송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가 C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가 C의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제1 손해배상채권: 93,572,896원

제1 선행소송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C는 원고에게 제1 약속어음과 관련한 손해배상으로 233,935,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140,359,344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93,572,896원²⁾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제2 손해배상채권: 327,527,930원

제2 선행소송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C는 원고에게, 제2 약속어음 관련 손해배상으로 726,142,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그중 435,685,656원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 대하여 위 435,685,656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따라 C에 대한 채권 역시 위 돈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C에 대하여 327,527,930원3)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2015. 10. 4.자 약정금 채권: 230,000,000원

C는 2015. 10. 4.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이프대금 미결제액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채권계획서(상환)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채권계획서에 기재된 230,000,000원의 약정금 채권이 있다.

라) 물품대금채권: 65,544,985원

원고와 C 사이의 2015년 9월경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거래대금 65,544,985원의 채권이 있다.

2) 피고

가) 제1 손해배상채권

① C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122,259,500원 상당의 대체물품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하였다.

② 제1 선행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을 밝힌 2016. 2. 23.이나 2016. 4. 6., 또는 C가 이와 관련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한 2016. 12. 15.,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2017. 5. 11.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어,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1 선행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나2029550호)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2021. 1. 25.경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나) 제2 손해배상채권

C는 제1 선행소송의 1심에서 2016. 12. 15.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물품 이외에도 8~9억 원의 허위거래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해 D는 2016년 1월경 C를 고소하였고, C는 2016. 10. 20. 956,515,092원의 허위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며 이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제2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이를 인식한 2016. 12. 15.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2 선행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2018. 5. 30.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

다) 2015. 10. 4.자 약정금 채권

C가 2015. 10. 4. 원고에게 채권계획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원고가 제1 손해배상채권으로 주장하는 233,935,240원과 관련한 변제계획을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는 제1 손해배상채권과 별도로 존재하는 채권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

라) 물품대금채권: 65,544,985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제1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C는 원고에 대한 파이프 물품의 공급자인 G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위 물품을 공급받는 자인 피고의 물품 인수인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C는 2015. 8. 3. 및 2015. 9. 9. 파이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인수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1 약속어음 결제대금 233,935,24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C에 대한 제1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3,572,896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대물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122,259,500원 상당의 대체물품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받아, 위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C가 2015. 9. 30.경 원고에게 '제1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사취 어음 부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십시오. 왜냐하면, 정상거래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서 처리해보도록 하십시오. 122,259,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G회사 재고보유분(이하 '이 사건 대체물품'이라 한다)을 알려드리오니 인수해가세요.'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체물품을 C 측으로부터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제1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담보목적이 아닌 대물변제 목적으로 C로부터 이 사건 대체물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물변제로 인해 원고의 제1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선행소송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C의 사용자인 피고가 제1 약속어음의 결제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판결문은 2018. 1. 2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늦어도 위 2018. 1. 29.에는 제1 약속어음과 관련한 C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2018. 1. 29.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가 C를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제1 손해배상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제2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C는 원고에 대한 파이프 물품의 공급자인 G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위 물품을 공급받는 자인 피고의 물품 인수인의 지위에서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는 파이프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인수서를 작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2 약속어음 결제대금 726,142,7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C와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피고에 대한 상계권 행사로, 그중 435,685,656원이 소멸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C에 대한 290,457,104원(= 726,142,760원 - 435,685,656원) 상당의 제2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제2 선행소송에 관한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시점인 2018. 5. 30.에는 위와 같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되었으므로, 위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그리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① C는 2016. 12. 15. 제1 선행사건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물품

이외에도 8~9억 원의 허위거래가 있다고 증언하였다.

② D는 2016년 1월경 'C는 D에 파이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파이프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D로 하여금 피고에게 956,515,092원을 교부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후 C는 기소되었고, 2017. 4. 6. 위와 같은 내용 등의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427호). C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노512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도13839호), 위 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2018. 4. 27.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 원고로부터 파이프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파이프 매매대금 878,846,036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파이프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 위 878,846,036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2 선행소송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분은 2018. 5. 3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2. 3. 11.을 기준으로 원고가 제2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제2 선행소송에 관한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이후 위 소송에 2020. 2.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까지 원고가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의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파이프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위 2020. 2. 6.자 준비서면을 통해 '만일 피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피고의 사용자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이로 인해 C에게 제2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결제함으로써 837,721,5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C의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원고가 제1 선행소송 또는 제2 선행소송 과정에서 위 2020. 2. 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이전에, 제2 약속어음과 관련한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가 제2 선행소송을 통해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의 물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이전에, 위 기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C가 제1 선행소송의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에서 쟁점이 된 물품 이외에도 8~9억 원의 허위거래가 있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2 약속어음과 관련한 C의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D의 C에 대한 고소, 이에 따른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C에 대한 유죄판결 과정에서 원고가 관련 자료나 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여 제2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C의 불법행위 및 그 손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제2 손해배상채권은 290,457,104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2015. 10. 4.자 약정금 채권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가 2015. 10. 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계획서(상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채권계획서(상환)

(1) 금액: 일억 삼천만 원(130,000,000)

- 자재(G회사 재고) 판매대금 및 차액분 결제

- 2015. 10. 12.까지

(2) 금액: 일억 원(100,000,000)

- 2015. 11. 30.까지

상기 건에 대해서 일정대로 상환할 것을 서약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제1 손해배상채권과 별도로 C에 대한 230,000,000원 상당의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는 위 채권계획서가 작성되기 불과 며칠 전인 2015. 9. 30.경 원고에게 제1 약속어음 관련

손해의 해결 방안으로, '제1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피사취 어음 부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122,259,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이 사건 대체물품을 인수해가세요'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팩스로 보낸 문서에 기재된 이 사건 대체물품의 가격과 채권계획서 제1항에 기재된 G회사의 자재 판매대금 및 차액분 결제로 표시된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1 약속어음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 또는 G회사의 자재 판매대금과 무관하게 C가 원고에게 2015. 10. 12.까지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위 채권계획서 제2항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C가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원고에게 2015. 11. 30.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다. 위 채권계획서가 작성된 시점,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C가 제1 약속어음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가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더 늦은 지급기한인 2015. 11. 30.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났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마.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와 C 사이의 2015년 9월경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거래대금 65,544,985원의 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앞서 인정한 원고의 C에 대한 290,457,104원 상당의 제2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의 행위와 관련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원고에게 제1 선행소송을 통해 확인된 140,359,34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일응 이 사건 채권양도 이전에 C에 대하여 위 140,359,344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관련소송과 제2 선행소송에서 문제된 2015. 1. 30.부터 2015. 7. 17.까지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도 C에 대해 손해배상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C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채권양도는 C가 피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C는 2013. 2.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점, C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위나 경제적인 목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의 사해성 및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의 주도로 거래하였던 D와의 사이에 관련소송을 진행하던 중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 시점에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제2 선행소송 진행 과정에서도 현출하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와의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4. 2.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제2 선행소송의 진행 중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위 소송에 현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피고, D, C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D가 피고에게 물품공급이 없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이는 연쇄적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 원고의 C에 대한 반환청구, C의 D에 대한 반환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피고는 D와 관련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4. 27.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2 선행소송의 소를 제기하였다.

②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면 원고와 같은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하거나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더욱이 C는 2013. 2. 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2. 27.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10. 21.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여 피고와 매우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지급받은 가액배상금을 분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아래에서 다른 채권자들이 위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가액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144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은 제2 손해배상채권액인 290,457,104원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액은 321,224,03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D로부터 변제받는 등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 위 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90,457,10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위 290,457,1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액이 486,500,098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채권 중 165,276,067원(= 486,500,098원 - 321,224,031원)을 양도하고, D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것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등 참조). 관련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액이 321,224,031원으로 인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에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액이 321,224,034원을 웃돌아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이 사건 채권액에 미달하는 290,457,104원에 불과하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III.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290,457,104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채권 중 162,276,067원의 양도 등을 구하는 부분이 배척되기는 한다. 또한, II.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소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원고는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주체가 C가 아닌 E 또는 F일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주체가 E 또는 F임을 전제로 제1, 2 예비적 청구를 병합한 것이다. 그런데 C가 G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주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2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IV.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기찬

판사김수현

판사이도훈

별지

바에 따라 '233,932,24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2) 위 233,935,240원에서 140,359,344원을 공제한 금액은 93,575,896원이나, 원고는 C에 대하여 93,572,896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원고는 2021. 9. 14.자 준비서면 15, 16면을 통해 원고의 C에 대한 이 부분 채권이 위 '726,142,760원에서 435,685,656원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290,457,104원(= 726,142,760원 - 435,685,656원)'이 아닌 '327,527,93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